

의안번호	2219332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6.6.29.
추계번호	26E29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4,282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4조 6,916억원(연평균 9,3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폐지될 경우 항구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득세 감면기간(5년)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의 세수효과를 제시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안 제30조제2항)	-4,282	-6,677	-9,224	-11,930	-14,803	-46,916	-9,383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제2항(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현행) 2026.12.31.까지 중소기업 취업 시 향후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90% 감면 - (개정안) 기간 관계 없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 시 향후 5년간(중견기업은 3년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세 100%(중견기업은 90%) 감면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0조제2항(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징수기준에 따라 2028~2032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일몰기한(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시점)을 폐지하고 있어 향후 항구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중소기업 취업자 5년)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의 적용례(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를 고려하여 신규 취업자 외에 기존 기준 취업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효과를 적용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관련
 - 2027년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전체(향후 5년)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세액감면 효과가 온전히 적용
 - 2027년 기준 취업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취업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동안 개정안에 따라 인상된 감면을 및 확대된 한도 적용
 -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설 관련
 - 2027년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전체(향후 3년)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세액감면 효과 적용
 - 2027년 기준 취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취업자 또한 잔여기간(2027년 이후 기간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연도까지)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봄
(예시) 2025년 취업자는 2027년 기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남은 1년 동안 세

액감면 적용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취업활동통계등록부’¹⁾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
 - 감면대상이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 청년의 약 13.5%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
 - － ‘취업활동통계등록부’상 감면대상 업종²⁾의 신규 청년 취업자³⁾ 수를 기준으로, 2024년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수는 중소기업의 약 13.5% 수준으로 파악됨
 -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감면액을 추계
 - － 지급명세서상 청년 감면 대상자의 13.5%가 추가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
 - －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의 1인당 감면액이 중소기업 청년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증가하는 인원에 비례하여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인상·한도 확대 및 일몰 폐지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계
 - － (감면율) 90% → 100%, (한도) 연간 200만원 → 300만원
 - － 지급명세서상 산출세액 구간별 1인당 평균 감면액을 바탕으로 감면율 인상·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계
 - － 지급명세서상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은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이므로, 이를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1) 「취업활동통계등록부」는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에서 포착된 개인 일자리에 대한 전수자료로서 인구 관련 항목(성별·거주지 등), 고용 관련 항목(종사상 지위·근무일수 등), 기업 관련 항목(기업규모·행정구역·산업분류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제외 업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3) 나이 34세 이하이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 기준

예: 청년 (5년간 감면)	감면액 발생 시점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25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26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2027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2028년 취업자					1년차

- 앞서 계산된 감면액이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동 추계에서 활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실제 발생한 금액 등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는 중소기업⁵⁾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등·경력단절 근로자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6. 12. 31.
-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 (2012년 취업자부터 적용)된 후, 점차적으로 확대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표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감면 대상		취업 후 감면 기간	감면율	연간 감면 한도
	대상	청년의 범위			
'11.12.31.	청년	15세~29세	3년	100%	없음
'14.1.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50%	없음
'15.12.15.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6.12.20.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8.5.29.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150만원
'22.12.3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25.3.14.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근로자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주: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1년 8,397억원에서 2025년 1조 1,638
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조세지출 실적	8,397	9,667	9,609	11,384	11,638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가.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분 세수효과 추계

□ 현행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약 13.5%에 해당하는 인원이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로서 추가로 감면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자료의 산출세액 구간별 1인당 평균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액을 추계

[표 4]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로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귀속 기준

산출세액 구간별 ¹⁾	연간 신규 취업 인원 ²⁾	1인당 감면액	전체 소득세 추가 감면액
	(명)	(만원)	(억원)
	A	B	$B \times A$
222.2만원 이하	20,386	79.9	163
333.3만원 이하	3,759	177.1	67
444.4만원 이하	1,176	179.2	21
555.6만원 이하	443	181.2	8
555.6만원 초과	483	186.6	9
소계	26,248		268

주: 1) 각 산출세액 구간은 감면 한도(200/300/400/500만원)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하는 임계치를 역산하여 구분

2) 전체 신고인원의 13.5%가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로서 추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누적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 수를 추정하고, 이를 연단위로 환산(1/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앞서 산출한 2024년 귀속 기준 감면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감면액을 산출하고, 이를 감면기간에 따라 배분하면 다음과 같음
- 2027년 기준 취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취업자에 대해서도 3년의 범위에서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 2027년 이후의 신규 취업자는 향후 3년간 세액감면 적용

[표 5] 감면대상 확대(중견기업 청년 취업자)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
기 존	2025년 취업자	294					
	2026년 취업자	294	304				
신 규	2027년 취업자	294	304	314			
	2028년 취업자		304	314	324		
	2029년 취업자			314	324	335	
	2030년 취업자				324	335	...
	2031년 취업자					335	...
	...						...
계		883	912	942	973	1,004	...

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분 세수효과 추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자료의 산출세액 구간별 1인당 평균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을 인상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계

[표 6]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대상 감면율 인상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액: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산출세액 구간별 ¹⁾	인원	1인당			전체 소득세 추가 감면액 ²⁾
		감면액		추가 감면액	
	(명)	(만원)		(만원)	(억원)
	A	B (현행 감면율)	C = B×10/9 (개정안 감면율, 300만원 한도)	D=C - B	D × A
222.2만원 이하	756,298	79.9	88.8	8.9	671
333.3만원 이하	139,437	177.1	196.7	19.7	274
444.4만원 이하	43,624	179.2	199.1	19.9	87
555.6만원 이하	16,452	181.2	201.4	20.1	33
555.6만원 초과	17,932	186.6	207.3	20.7	37
소계	973,743				1,103

주: 1) 각 산출세액 구간은 감면 한도(200/300/400/500만원)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하는 임계치를 역산하여 구분

2)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앞서 산출한 2024년 귀속 기준 추가 감면액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감면신고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감면액을 산출하고, 이를 감면기간에 따라 배분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취업자) 2027년 기준 취업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취업자에 대해서도 잔여기간 동안 감면율 인상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 발생
 - － 2024년 귀속 기준, 감면율 인상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액은 1,103억원이고, 이를 감면기간(5년)으로 나눈 연단위 환산액은 221억원
- (신규 취업자) 2027년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인상된 감면율 및 확대된 한도에 따른 세액감면이 온전히 적용(감면신고액에 추가 감면액을 합산한 금액만큼 세액감면 발생)
 - － 2024년 귀속 기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감면신고액(9,926억원)을 감면기간(5년)으로 나누어 산출한 연단위 환산액 1,985억원에 추가 감면액 연단위 환산액 221억원을 합산하면 2,206억원임

- 추가로 앞서 계산한 ‘감면 한도액 인상’의 효과도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후,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배분

[표 7] 감면율 인상 및 한도 확대(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
기 존	2023년 취업자	243					
	2024년 취업자	243	251				
	2025년 취업자	243	251	259			
	2026년 취업자	243	251	259	267		
신 규	2027년 취업자	2,427	2,507	2,588	2,673	2,760	
	2028년 취업자		2,507	2,588	2,673	2,760	...
	2029년 취업자			2,588	2,673	2,760	...
	2030년 취업자				2,673	2,760	...
	2031년 취업자					2,760	...
	...						...
계		3,398	5,765	8,282	10,958	13,799	...

(3) 추계결과

□ 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4,282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4조 6,916억원(연평균 9,3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 일몰이 폐지될 경우 항구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5년)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의 세수효과를 제시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제 30조제2항)	-4,282	-6,677	-9,224	-11,930	-14,803	-46,916	-9,383
중견기업 취업자분	-883	-912	-942	-973	-1,004	-4,714	-943
중소기업 취업자분	-3,398	-5,765	-8,282	-10,958	-13,799	-42,202	-8,440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